

『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세채 의원 외 10명

2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 제10조제2항의 [별표1]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이 도내 타 시의 요금에 비하여 높음에 따라 이를 인하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목욕탕 요금 인상을 억제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제10조제2항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[별표 1]의 욕탕용 요금 인하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
- 「하수도법」 제65조(사용료 등)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
 - 「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 제10조제2항의 [별표1]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이 도내 다른 시에 비하여 높음에 따라 인하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목욕탕 요금 인상을 억제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[별표1]의 욕탕용 요금 인하

○ 검토 결과

- 2007. 1. 11 업종 통·폐합 시 조정된 욕탕용 요금의 인상률이 도내 다른 시에 비하여 130~157% 높음에 따라 이를 인하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
- 공공하수도 사용료 중 욕탕용 사용료를 인하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목욕탕 요금인상을 억제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
- 참고로,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뢰 결과 “원안가결” 처리되었음